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행정상 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적용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01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행정상 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적용	2

I. 제안경위

2024년 9월 3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행정상 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적용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관계공무원이 무허가 사업소에 대한 폐쇄조치 등 현행법에 규정된 행정상 강제의 절차 등에 관해서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폐쇄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	제37조(폐쇄조치) ① (현행과 같음)

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신고·등록·허가 없이 사업을 하거나 정지·취소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의 간판이나 영업표지물을 제거, 위법성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해당 사업의 필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봉인(封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37조제1항), 이러한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고 있음(제37조제2항).¹⁾

법 제37조제1항과 같이 행정청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자력으로 강

1) [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제37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현황 (단위: 건)

연도	합계	직업소개사업 폐쇄조치 건수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쇄조치 건수	근로자공급사업 폐쇄조치 건수
2019	3	2	1	-
2020	2	1	1	-
2021	1	1	-	-
2022	-	-	-	-
2023	-	-	-	-

※ 자료: 고용노동부

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행정상 강제’라고 하는데, 행정상 강제는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로 구분됨.

현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간판·영업표지물의 제거, 시설물 봉인 등의 내용은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강제’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 행정청이 미리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은 달성하는 것을 뜻함.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 달성을 하는 것
 -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간판 등의 제거, 시설물 등의 봉인 등 행정상 강제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인데, 「행정기본법」 제32조는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에게 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의무를 부과하고, 직접강제 실시 전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 기간 부여와 함께 불이행 시 조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어 처분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무 이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봄.

다만,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기본법」이 적용된다는 점²⁾에서 개정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중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행정기본법」 제32조)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행정목적은 달성할 수 없거나 이미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즉시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은 달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기본법」 제33조의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기본법」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에도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및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 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